10
2019
• 통권 434호 •

가정상담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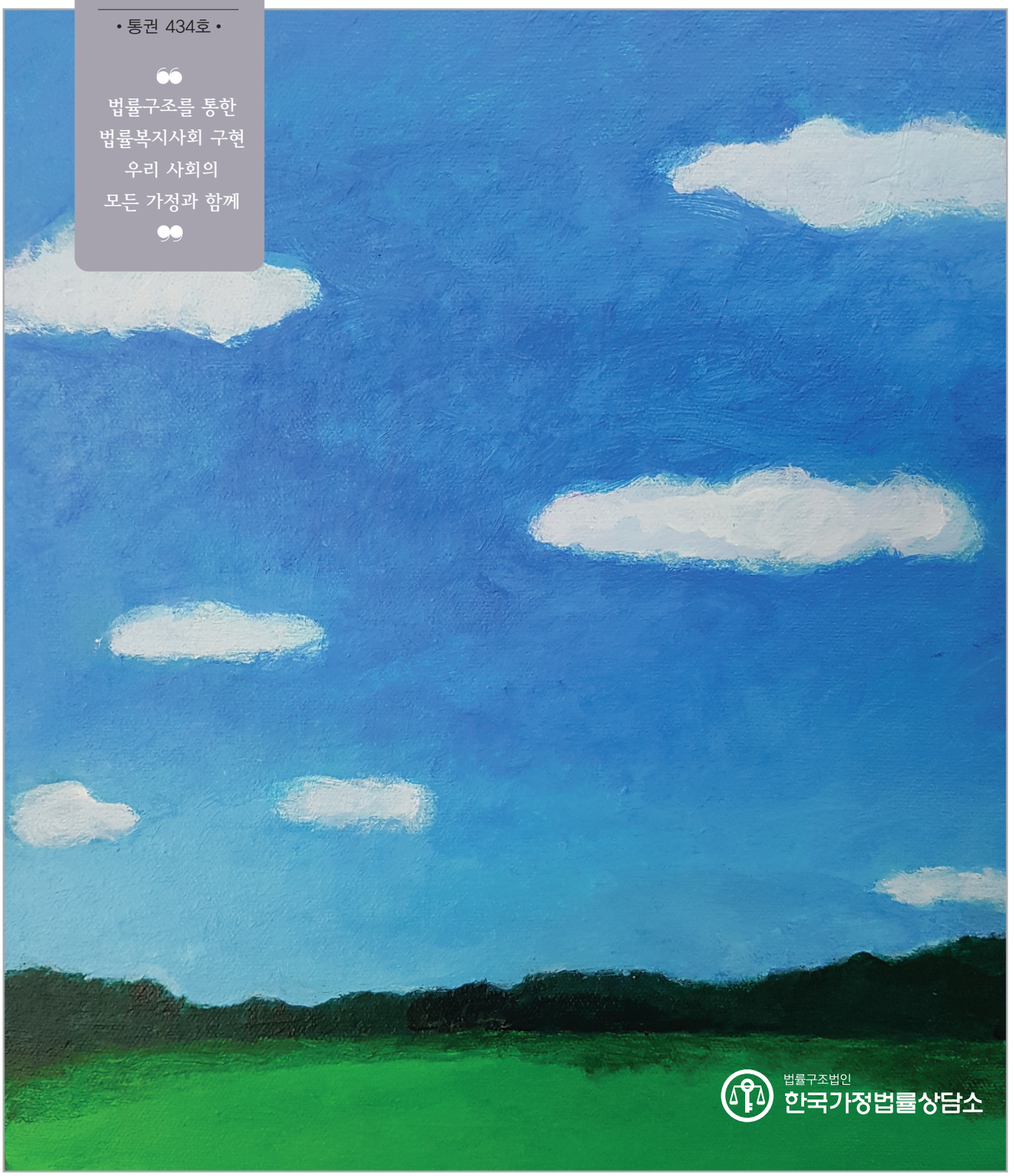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본소 교육부에서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35가정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를 진행하였다. (관련내용 17면)

본소에서는 9월 17일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28일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에 참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0면)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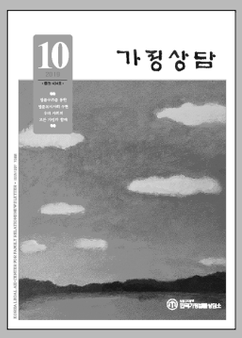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하늘〉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별기고 |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12 • 가정폭력상담실
17 • 교육부
22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⑱
24 • 인터넷 상담
25 • 좋은 책
봄에 나는 없었다
26 • 결혼과 인생(200) 영화 이야기
벌새 _ 김용언
28 • 현장실습 소감문
30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9. 10.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4 CTP-8

이 달 의 메 시 지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의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려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가족 자살 소식이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즘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 역시 어느 사이에 묻혀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세상에 탈북 모자가 굶주려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있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병든 아내를 혹은 남편을 홀로 간병하다 함께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지병을 가진 40대 딸을 간병하던 60대 어머니가 딸의 목숨을 거두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첫 단락을 온통 암울한 내용으로 채우고 보니, 더욱 답답한 심정이 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 2017년 통계로 2005년 이후 13년 간 'OECD 자살률 1위'에 있던 우리나라가 잠깐 2위로 내려왔다가 2018년 다시 1위로 올라섰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10대 사망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자살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10~30대 사망원인의 1순위였고, 40~50대에서는 암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기준인구로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해 계산한 '연령표준화자살률'은 24.7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암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

리나라는 현재 같은 달로 비교하는 출생아 수에 있어서 40개월 연속 최저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불과하여 2018년 합계출산율 0.96명에 이어 0.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 최초의 '초저출산국가' 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설령 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호황을 보이더라도 인구 문제라는 근본적인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경제 위기 등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해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그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 왔습니다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함께 이겨낼 사람들마저 점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은 앞서 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어두운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의 언론은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가득한 공항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하루 세 끼를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기유학이나 해외연수를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쩔쩔매는 젊음이 더 많고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부채를 짊어지고서 삶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자라던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3백만 원 내지 5백만 원 정도의 정착지원금만 손에 쥔 채 홀로 사회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은 먼 꿈같은 것이어서 비자발적으로 비혼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가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우리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어 가지지 못한 이들을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으로 몰아넣는 것은 흔치 않아 보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이름의 위원회 내지는 전문가들을 통해 수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현실에 맞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에 머물러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풍요롭고 매일이 행복한 삶,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는 조건 하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즐기는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극히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우리는 무겁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셋째는 부의 상징' 이라는 말을 우스개 인양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까지는 그저 낳아 기르는 것이 평범했다는 뜻입니다.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 하나를 출산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현안에 대해 중장단기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바르게 인식하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에서 '어려워도 세상을 살 만한 곳' 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6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최근 5년간 3차례의 가족법 개정이 있었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2014년 개정(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개정. 2015. 10. 16. 시행), 면접교섭권에 관한 2016년 개정(법률 제14278호. 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개정. 2018. 2. 1. 시행)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개정 법률에는 각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주어진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위 각 개정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짚어본다.

II. 친권상실에 관한 2014년 개정법

1. 2014년에 개정된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 전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친권상실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개정 전에는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각각 독립적인 친권상실의 원인이 되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민법 제924조에 따르면 '친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의 상실(또는 일시 정지) 선고를 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 자녀의 복리침해라는 요건은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제924조는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각각 독립적인 친권상실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924조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여, 친권상실의 원인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친권상실의 원인 중에서 현저한 비행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정된 제924조의 요건(친권의 남용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침해)을 적용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제3자에 대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를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정 전 제924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정법에 의하면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자녀의 복리 침해라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갈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친권상실의 원인 중에서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 개정 전 제924조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녀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친권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면 친권자의 소재불명, 장기간의 의식불명, 중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능력의 부족(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으나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친권상실의 원인 중에서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삭제한 결과, 이제는 위에서 열거한 사정(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이 있는 경우에도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개정민법 제924조의2가 친권 일부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친권의 일부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볼 때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조차도 법률의 흠결에 의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할 수 없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위에서 친권의 상실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개선안을 제시해 본다. 친권상실 사유로서 지난 민법개정에 의해서 삭제된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1] 개정민법상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친권의 남용'만으로는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사건(특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父)가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건에 있어서 그 부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에 의한 자녀의 강간이나 추행이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친권은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국가가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친권의 일부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과도하여 친권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친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일단 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한다)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친권 본래의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친권의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2] 이 경우에는 친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친권상실에 관한 법원의 실무가 부에 의한 자녀의 강제추

1) 물론 아동복지법에는 여전히 '현저한 비행'과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독립된 친권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8조).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규정이 남아 있다고 해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친권상실 사유를 대안 없이 삭제한 것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방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민법에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규정은 민법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나, 적어도 기본법인 민법에서 친권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는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예컨대 친권의 일부인 징계권의 행사로 성적이 떨어진 자녀를 심하게 체벌한 경우에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체벌이 징계권의 정당한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참조. 현재 친권 중에서 징계권을 삭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체벌은 친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단 친권의 행사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친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상정하든 친권의 행사로서 자녀를 강간하거나 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8 CTP-8

행, 강간 등의 사건에 있어서 일관되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친권상실선고를 해왔던 것도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한다.[3]

결국 2014년 개정민법 규정과 같이 친권 상실의 요건을 친권의 남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법률의 흠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4년 민법개정 시 친권 상실의 요건을 축소시킨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의 흠결을 해소하려면 지난 민법개정에 의해서 삭제된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법

1. 2015년 헌법재판소[4]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모가 그 자녀를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2017년 개정민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 ①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제844조 제1항, 제3항. 이 점에 있어서 개정법은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②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는 달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제854조의2 제1항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은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가사소송절차가 아니라 가사비송절차이므로 절차가 간이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③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854조의2 제1항 단서). 즉 모(母)나 모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어야 하며,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법 규정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법 규정과 같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물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기 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의 전 남편을 자녀의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전 남편이 아버지로 등록되며, 모나 모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정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결국 개정의 의의가 상실된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사건에 비하여 절차가 간이하다고 설명되고 있지만, 친생자관계의 부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판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받으려면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검사결과

3)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도 있다(예컨대 서울가정법원 2015. 7. 20. 2014느합30218 심판 등). 그러나 대부분의 심판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예컨대, 서울가정법원 2014. 5. 26. 2014느합30022 심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상대방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친딸인 사건본인들에게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 2013. 2. 4. 2012느합8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2. 10. 8. 2012느합237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1. 6. 21. 2010느합259 심판; 서울가정법원 2010. 4. 20. 2010느합12 심판 등).

4) 헌재결 2015. 4. 30. 2013헌마623.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9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가 나올 때까지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또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야 심판이 확정된다(즉시항고 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예컨대 전 남편)와 청구인(예컨대 모)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비로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법원에서 아무리 신속하게 심판을 한다고 해도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은 때부터 심판이 나올 때까지 보통 6-7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소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의 본질은 친생부인의 허가라는 제도 자체가 출생신고 기간의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3. 그런데 개정법의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이 세상에 태어난 아동은 누구나 출생 후 신속하게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은 출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기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1개월이라는 기간 내에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법의 입법자들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모가 그 자녀를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법구조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입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이제 모는 그 자녀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모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854조의2 규정을 신설하였다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와 국회가 제854조의2 규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기간이 조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개정을 강행하였다면, 아동의 복리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정민법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모의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제844조 제1항, 제3항). 즉 그 자녀는 모와 모의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며, 모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자녀의 법률상의 부(父)의 신분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6] 혼인관계의 파탄과 그로 인한 이혼의 성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

5) 외국은 우리에 비하여 출생신고 기간이 훨씬 짧다. 예: 독일 7일, 프랑스 3일, 일본 14일, 오스트리아 7일, 스위스 3일 등.

6)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결 2015. 4. 30. 2013헌마623)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었으며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이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자일 개연성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이 아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이며, 이혼으로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종료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성적 자유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모가 이혼 후 300일 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에서 포태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고 해도 남편의 자녀가 아닐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친생추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생추정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고 해도 이혼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법개정으로 귀결되었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7]

이 나라들의 입법례에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모가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남편을 자녀의 부(父)로 규정하며, 임신의 시기가 혼인 전이라도 관계없다(출생 시 기준의 원칙). ② 따라서 모가 이혼(혼인 취소, 무효)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종료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고 해도, 전 남편은 그 자녀의 부가 되지 않는다. ③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모가 남편의 사망 후 300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는 306일(네덜란드) 내에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사망한 전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 ④ 위의 나라들도 예전에는 이혼 후 일정한 기간(스위스: 300일, 독일, 오스트리아: 302일, 네덜란드: 306일) 내에 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개정에 의해서 전부 삭제되었다. 그 이유로는 ①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모가 이혼 후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오스트리아 신분등록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 혼인 취소, 무효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모가 출산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약 95%의 자녀는 전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자녀로 밝혀졌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가 이혼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경우,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자녀의 신분등록부를 다시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서는 이혼 후 출생한 자녀는 일단 법률상의 부(父)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부는 기록되지 않는다.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생부(전 남편 또는 제3자)의 임의인지 또는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발생한다.

5. 위에서 본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모가 이혼 후에 출산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지 않는다면, 출생 시에 모는 확정되지만 법률상의 부는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법률상의 부는 기록되지 않으며, 출생신고 후 임의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에 의해서 법률상의 아버지가 확정될 것이다(모와 생부가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출생신고 후 즉시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민법이 개정된다면 모의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고 자녀의 출생등록권 침해로 인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2017년 개정민법은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일단 모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모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결방식은 자녀의 기본권인 출생등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문제를 먼저 경험한 외국에서 2017년 개정민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 이와 같이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자녀의 출생등록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출생등록권을

7) 노르웨이(1981년 노르웨이 친자법 제3조), 덴마크(2001년 덴마크 친자법 제1조), 스웨덴(1977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적용됨. Giesen, Schweden, in: Bergmann/Ferid/Henrich(Hrsg.),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 Teil III A 32 v. 1.7.2013.)도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11 CTP-8

침해하는 친생부인의 허가제도(인지의 허가제도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를 마련한 법무부와 이를 아무런 논란 없이 통과시킨 국회는 이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IV. 면접교섭권에 관한 2016년 개정법

2016년 민법개정 전에는 자녀와 부모 이외의 제3자(예컨대 조부모) 사이에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혼 후 부(父)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는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갑자기 부가 사망하여 모가 친권자가 된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류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조부모에게는 면접교섭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 조부모 등 자녀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하급심에서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 6. 28. 2013브33 결정은 형제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6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부모 아닌 제3자(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837조의2 제2항: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예로서 법제처 해설은 부모 일방의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소 수감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이 없어서 면접교섭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조부모도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려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이와 같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가정법원은 조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밖의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거나 면접교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조부모)으로 한정한 것은 개정법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예를 들어 형제자매, 이모 등에게는 여전히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V. 맺음말

최근에 개정된 가족법 규정들은 전부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가족법의 중심이념 중 하나가 자녀의 복리실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진 가족법 개정도 자녀의 복리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최근 3차례의 가족법 개정에 의해서 자녀의 복리실현에 보다 유리한 법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친권상실 등에 관한 2014년 개정법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친권상실의 사유를 축소시킴으로써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예를 들어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모가 전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도 민법상 친권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친권자인 모가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친권의 남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법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을 전제로 하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생등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끝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2016년 개정법은 조부모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경우를 너무 좁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족을 면접교섭권자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자녀의 복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세 가지 개정법률의 재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12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훈계와 폭력 사이, 자녀에 대한 훈계도 가정폭력일 수 있어

사건번호 2018버4**폭행치상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10회, 교육강좌 3회,
집단상담 5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8. 5. 15. ~ 2018. 12. 1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부자관계이다. 행위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초에 정년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들(23세)은 대학 1년을 마치고 군복무 후 제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복학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며 게임만 하는 등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행위자는 2018년 2월 사건 당일 밤늦게 피해자가 세탁기를 돌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옆 벽을 향해 던졌고, 깨진 유리컵의 파편에 피해자의 턱과 좌측 팔이 찢어져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는데 자신만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으나 상담에는 성실하게 임하였다. 피해자는 2018년 3월에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10월 하순에 실시 예정인 자격시험에 임박해서는 시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상담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하여 그에 맞게 상담 일정을 조정하였다.

행위자는 교육동영상 시청 등을 통하여 자신이 가정폭력을 하였다는 사실과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한 결과 자녀 및 아내와 갈등이 생겼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행위자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않고, 아내 역시 행위자를 투명인간 대하듯 한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이 자상하지 못한 나쁜 아버지였음을 인정하고 장차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피해자가 다 커버린 지금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겠고, 아내도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하는데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행위자가 피해자와 아내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우선 피해자와 아내를 문제시하는 행위자의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고 웃는 얼굴로 대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본소에서 발간한 비폭력대화법 책을 교부하고 독서 후 피

해자 및 아내와의 대화에 적용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아내와 아들에게 잔소리가 심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 나름대로 반성과 화해를 위하여 가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밥을 아내가 먹기도 한다고 변화를 보고하였다. 다만, 행위자가 마음을 전달하지는 않았기에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고, 행위자에게 겉으로만 변하지 말고 속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하였다. 피해자와도 거의 대화는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래도 행위자는 이제는 전과 달리 아내와 피해자를 무시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편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다고 하면서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4**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교육강좌 1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4회
등 총 10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4. ~ 2018. 12. 21.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부녀관계이다. 행위자는 1998년 결혼하였으나 피해자가 세 살 때, 아들은 돌이 되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가출하여 2003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에 의한 이혼을 하였다. 피해자와 아들은 행위자가 양육하고 있다. 이혼 직후에는 같은 동네에 살던 행위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자녀 양육을 도와주었고, 10년 전부터는 어머니가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있다.

행위자는 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미용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행위자는 2018년 2월 사건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방을 정리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리는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시청각교육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유형과 범주 등 가정폭력에 대하여 이해한 후, 일단 욕설을 하는 것부터 고치겠다고 과제를 수립하였다. 욕설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력은 다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잘 지내게 되었다. 사건 후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신의 방을 정리, 청소하면서 행위자가 화를 내거나 충돌할 일이 없어진 점도 큰 변화였다.

종결상담시, 고교 졸업을 앞둔 피해자는 미용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화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으며, 행위자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역할을 10점 만점에 7점으로 현재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한해한해 나이를 먹으며 좀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자신은 도심을 지나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으며 현재 행복도가 10점 만점에 9점에 달한다고 평가하였다. 상담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였고, 폭력에 대한 의식 및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8버9*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교육강좌 1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2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14. ~ 2018. 12. 1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1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녀(31세, 28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7년 12월 사건당일 술에 취해 자신과 의논 없이 피해자가 친정오빠에게 투자하고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며 손해를 보고 있는 사실에 화를 내고 다투다가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도 행위자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이 있으며, 사건 후 피해자는 행위자 모르게 투자한 것을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하였는데 사건 이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행위자의 단주를 바랐다.

행위자는 자신의 의사 전달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술을 마시고 큰 목소리로 말하다보니 가족들과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제 돌이키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절주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부부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위자는 그에 따라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상담 중기에 피해자는 행위자가 술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인정하였고, 이전에 10점 만점에 0점이던 부부관계가 현재는 7~8점으로 원활하다고 하였다.

종결평가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술을 많이 줄여 하루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목소리도 작아졌고,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가게 일도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였다. 행위자가 간경화진단을 받아 술을 마시는 것이 염려되지만 현재의 음주수준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과거에 행위자는 가게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태도로 손님들을 대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실제로 행위자는 얼굴표정이 상담초기보다 훨씬 밝아졌다. 행위자는 세상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일도 줄이고 주변정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고생을 많이 했기에 잘 살아갈 것이라고 하고 다음해에는 아예 단주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 향후 노력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8**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8. 6. 19. ~ 2018. 12. 13.

상담경과

행위자는 1999년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에서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으며 전혼자녀가 한국에 거주한다. 행위자는 2002년 중국 교포로 한국에서 살던 피해자와 결혼하였다. 피해자는 한국 영주권이 있으며 마사지숍에서 근무한다. 부부 사이에 1남(15세)이 있는데 중국 연길에서 조부모와 살며 학교에 다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한국에 다녀간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2018년 4월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던지고, 속옷을 찢고, 침대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도 생각하여 부부는 화해하였으며, 행위자는 폭력사실을 반성하고 향후 노력을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상담 기간 중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절대로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폭

력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절대로 폭력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가장 변화된 점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점을 꼽았으며, 현재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는 등 폭력성이 확실하게 개선되었고, 의심하지도 않으며, 태도가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각자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생일선물도 챙겨주지 않는 행위자가 가끔 남남처럼 느껴진다며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앞으로 행위자가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랐다. 이러한 남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8점으로 평가하는 등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사건번호 2018버1** 폭행, 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6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8. 9. 5. ~ 2018. 12. 13.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결혼한 지 20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14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7년 12월 사건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가 부정한 일을 한 것에 화를 내며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폭행하였으며, 전날에는 피해자와 외식 문제로 시비하면서 부탄가스를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터트려버리겠다고 협박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공유하지 않고 통화기록을 보여주지 않아 오해가 생겼으나 지금은 오해가 풀렸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처부모들이 함께 살면서 딸을 돌보아주다가 아무런 의논 없이 이사를 결정하여 다소 섭섭하였지만 이제는 세 식구 – 부부와 딸 – 가 잘 살아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고,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부부가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은 법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담중기 무렵 피해자가 진술한 갈등원인과 욕구에 의하면 결혼생활 중 행위자는 술을 마시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아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먼저 화해하려고 애써왔지만 이제는 지쳐서 행위자가 스스로 화를 풀기를 기다리다보니 화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힘든 점은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행위자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피해자는 행위자가 딸을 배려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상담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집단상담을 통하여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은 진전이 있었다. 상담자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행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당부하였다.

상담종결 무렵, 행위자는 암 초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지만 회사에 다시 출근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를 비롯한 온 가족이 행위자의 암 발병으로 많이 놀랐지만 위기를 잘 넘겼고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 좋다고 하였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16 CTP-8

사건번호 2018버8**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5회 등 총 14회 실시

상담기간

2018. 9. 20. ~ 2018. 12. 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2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6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시가에 방문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밀치고, 현관문에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당일 야간에 같은 이유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폭력 외에 발로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에 의하면, 시부모가 결혼과정에서 보인 태도, 신혼집 마련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점, 피해자 부모 이혼에 대한 거론 등 행위자 부모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이 부부갈등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에게는 큰 불만이 없지만 시부모와의 갈등문제를 부부간에 나누고 싶은데 행위자가 공감해주지 않는 것에는 불만이었다. 행위자는 자신의 부모가 허언을 한 책임은 있으나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다. 또 12월에 미국으로 3년간 포스트닥터 유학을 갈 예정이고 그 기간 중 부모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로 약속하였기에 피해자가 부모의 문제점을 반복 거론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고 해결방법도 없다고 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행위자와의 소통 방법을, 행위자는 피해자가 시부모를 반복적으로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상담초기에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해자가 변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담종결시에는 피해자와 부딪히는 요인들을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행위자는 폭력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미국은 폭력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절대로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아이가 없다면 이혼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지만, 아이를 생각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조율해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 성취를 결코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미국 체류 중 생활비를 시부모가 보조해주기로 하여 갈등요인은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의 폭력 및 부부갈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향후 폭력재발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17 CTP-8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 아쉬웠는데, 이번 에버랜드 여행이 아이를 더 너그럽게,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오전 9시 ~ 9월 7일(토) 오후 3시
- 장 소 : 애란원,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35명
  자녀 33명
  조은경, 천다라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재근 팀장, 노미윤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희 부장, 김남훈 주임(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김수연, 노윤정, 박인희 강사
  (트리인마인드예술치료교육연구소)
  애란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18명
- 후 원 :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태풍 링링의 위세에 모두들 떨고 있었지만 에버랜드에서 열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를 손꼽아 기다렸던 비혼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3월 캠프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에버랜드에서 가진 캠프였기에 비혼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은 캠프 전날까지 태풍이 온다는데 캠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매일 매일 물어왔다. 비혼모 35가정은 이런 날씨의 어려움에도 그렇게 기다리던 캠프를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다녀왔다. 태풍 링링에 대한 걱정은 TV속에만 있는 듯 아이들과 엄마들의 표정은 즐거움에 들떠 있었고, 돌아오는 날 버스에 승차하기 전까지도 체험을 하나라도 더하려고 아이와 함께 뛰어다니는 엄마들의 모습에서 캠프를 기다렸던 엄마들의 기대와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상담소는 보다 많은 비혼가정의 참여를 위해 서울과 경기권역에 있는 한부모가정시설과 지원센터, 공동체에 홍보를 하고 일간지와 가정상담지, 홈페이지에 캠프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비록 태풍이란 악재 속에서도 캠프에 대한 문의와 관심은 여전했다.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건강보험, 주거 및 법률 관련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에버랜드 내에 있는 홈브릿지 캐빈호스텔에서 숙박을 하며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인 사파리월드에 Q-PASS로 입장하여 관람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야간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는 심리적 · 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프로그램 개관

1.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사 : 이재근 팀장, 노미윤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경제적 빈곤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한

부모 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결손처분제도 및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강의와 상담이 있었다.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사 : 임금희 부장, 김남훈 주임(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제목으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등과 관련한 강의가 있었다. 강의 이후 강사는 주택임대차 재계약상의 유의사항, 임대주택 신청자격 여부 등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임대주택과 관련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고, 특히 강의 후 전세임대에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3.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교육으로는 비혼모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 면책과 관련 한 강의가 있었다. 교육 후 상담을 원하는 엄마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많아 이러한 교육과 상담의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4.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 강사 :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김수연, 노윤정, 박인희강사(트리인마인드예술치료교육연구소)

엄마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반으로 나뉘어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동작치료(3세 아동), 놀이치료(4세에서 6세 아동), 미술치료 프로그램(초등1학년부터 중학생)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기도 하였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보다 친밀감을 나타내었다.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과 강사의 지도로 아동들은 친구, 동생, 형, 누나,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정서적 교류와 함께 유능감, 친밀감, 배려, 적극성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5. 「비혼모 가정을 위한 법률 상담」

▷ 강사 : 조은경, 천다라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버랜드 오후 체험 이후 저녁시간에는 숙소에서 법률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19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혼모들이 그동안 궁금해 왔던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등 비혼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채무 관련한 파산 및 면책 상담이 있었다. 상담 후에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6. 「용인 에버랜드 체험」

참가자들은 교육 참여 이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파리월드' 외 다양한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점심식사 후 해산 하였다.

○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어려운 점

1. 경제적인 문제 – 소득의 불안정, 육아로 인해 안정적인 구직이 어렵고, 소득이 적음.
2.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
3.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데 어려움.
4. 주거문제,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기 너무나 어려움.

바라는 점

1. 법개정 –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원, 정부의 양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되길 원함.
2. 시설에서 독립했을 때 아이 돌봄과 자립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함.
3. 경제적 소득이 생기면 한부모 가정에서 탈락되어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 개선을 원함.
4. 소송구조(인지, 유전자검사, 양육비 청구 등)의 확대 등

○ 정리

심각한 저출산 시대라는 사회적 환경과 비혼이라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출산을 결심하고 자녀를 낳아 열심히 양육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용감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비혼모들의 용기와 희생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들에 대한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을 결심한 비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사회적 · 정책적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캠프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엄마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에게는 평범한 소소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 · 경제적 · 제도적 ·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제도의 개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캠프를 통해 이를 위한 본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깊이 느꼈다.

○ 참가자들의 소감

김○○ 씨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없어 즐겁게 놀았습니다. 법률퀴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주거 설명, 건강보험 관련 내용도 유익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0 CTP-8

명○○ 씨

임산부라 6개월 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 씨

에버랜드를 처음으로 온 것이라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임산부라 타지 못하는 놀이기구가 있어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밤에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김○○ 씨

아이들과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한 여행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씨

가을 캠프에 와서 법률에 대해 많이 알고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재밌는 1박 2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씨

아이와 시간을 내서 놀러오기가 힘들었는데 쉬는 날에 이렇게 즐겁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굳은 날씨였지만 이렇게 아이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아이와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겨서 좋답니다. 신나는 에버랜드에서 우리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려요.

법률교육을 통해 지식도 쌓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뿐만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다양한 교육을 좋은 곳에서 들으니 기분 좋게 듣고 뇌에 새길 수 있었네요. 날씨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와 즐겁고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생기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씨

자원봉사자분들이 동행하며 도와주셔서 아기들과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 해서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정○○ 씨

봉사자와 같이 해서 편했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황○○ 씨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녁을 혼자 챙겨 먹고 늦은 시간까지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여름방학 때 에버랜드에 꼭 가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주기에는 힘들어서 롯데월드는 어떠냐며 아이를 달래었죠. 집에서 에버랜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도 넘게 걸리고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해야 하는데 짐 들고 2시간씩 오고가기란 생각만 해도 지쳐요. 아이는 맨날 불만스러워 했어요. 태풍이 걱정됐지만 들뜬 아이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휴가를 신청하고 쉬는 날 일을 미리 앞당겨서 하느라 또 야근을 했지만, 에버랜드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너그러워진 아이는 혼자 밥 먹고 설거지도 하고 시키지도 않은 숙제를 하고 스스로 문제지까지 풀어놓고 기다리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요. 에버랜드 가는 날까지 아이도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당일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날씨부터 확인하던 아이는 11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며 설레는 마음 고스란히 드러내는 찬사를 남발하고서는 평상시보다 빠르게 준비를 끝내고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재잘재잘 이야기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모습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번 기회가 감사했어요. 에버랜드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태풍 소식 때문인지 사람이 없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두 번이나 타고 사파리를 거쳐서 로스트밸리도 돌아보고 지친 엄마 옆에서도 짜증스러워 하지 않고 같이 쉬면서 차분히 기다려 주었죠. 이번 에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1 CTP-8

버랜드 여행이 아이를 더 너그럽게,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 에버랜드 여행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하고 단단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회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장○○ 씨

야외로 처음 나오게 되어 아이도 설레고, 저도 설레 너무도 뜻깊은 캠프입니다. 아이는 놀이공원에 가서 형들이 타는 것을 몇 개나 더 탈 수 있다며 기대했던 터였기에 오늘 오후 반나절 동안 행복한 상태로 함께하였습니다. 드디어 110cm를 넘겼기에 회전 열차와 절반의 바이킹도 탈 수 있게 되었고, 고스트 신비여행도 함께했으며, 마법사 영화를 보고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는 재밌고 신났던 놀이기구를 연속해서 타 봤고 쇼핑센터에서 이것저것 장난감을 고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애탔던 시간을 보낸 것들이 디딤돌이 된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고난을 버텼기에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씨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약 1년 정도 미납돼 있어 병원 진료가 안 될까봐 감기 등으로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미납과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정보 알게 되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의 필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LH 주거 교육은 현재 법적 한부모가 유지가 되어야만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계약 시 소득이 초과되어도 일반 소득 기준에 따라 월 납임금이 부가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어서 주거고민 또한 해소됐습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지청구 시 아이의 성이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되면 아이에게 혼돈을 줄까 걱정돼 시도도 하지 못했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와 에버랜드에서 1박은 처음입니다.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제법 탈 수 있는 놀이기구도 많고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제게도 정말 환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 씨

정말 즐거웠어요. 태풍이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먹는 것, 자는 것, 즐기는 것 등등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도 좋았어요. 교육 덕분에 알게 된 것도 많고, 많은 것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감동이었어요. 엄마들의 든든한 선생님들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좋았어요.

김○○ 씨

캠프에서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서 돌아갑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우천예보에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아이들과 즐겁게 사파리 체험을 하면서 호랑이, 사자도 보고 곰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식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저 또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할로윈 축제 기간에 와서 할로윈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려요. 다가오는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김○○ 씨

안녕하세요? 먼저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선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캠프는 타이틀처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듣고 싶었던 LH 강의도 듣고, 좋은 숙소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의 웃는 모습을 자주 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종종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아기랑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2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조사 · 연구사업과 인권운동 (1)

상담소는 법률구조사업과 병행하여 가정 파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족문제 예방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국 여성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물론 그 동안도 내담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상담통계를 통해 분석해 오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회 전체, 여성 전체의 현황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학문의 전문화가 각계에서 상당히 진척되었고 여성문제나 가족문제 등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상담소가 필요로 하는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 통계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태였다.

따라서 상담소로서는 이 분야에 대한 독자적 사업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상담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공헌할 것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소는 포드재단의 지원으로 상담카드의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1978년 들어 본격적 연구사업을 시작했다. 연구사업의 첫 주제는 '한국의 이혼율 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이혼부부의 친자 취급 실태'였다.

아아가 상담소는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으로써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문제를 폭넓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동과 노인의 인권문제, 해외동포와 이민가정의 문제로 시야를 넓히기 시작했다.

조사 · 연구사업의 첫 결실

한국의 이혼율 연구

상담소의 조사 · 연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시작한 첫 연구사업은 '한국의 이혼율 연구'였다. 우리나라의 이혼문제에 관해서는 일찍이 1957년 이태영 소장이 '한국의 이혼제도 연구'라는 저서를 펴낸 바 있고, 또 1969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1911년부터 1966년까지의 우리나라 이혼율에 관해 발효했지만 그 후 사회가 급속도로 변동되고 이에 따라 가정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67년 이후 10년간의 이혼율을 조사 · 연구하기로 한 것이며, 그 결과를 1979년 10월 11일 상담소 23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발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율, 둘째, 전국 각 지방의 이혼율, 셋째, 주요 국가의 이혼율과의 비교 등이었다. 또한 연구 결과 앞으로 이혼율이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통계 및 그 결과는 발표되자마자 각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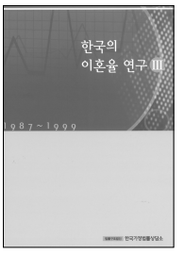

이혼부부의 자녀문제 연구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필연적으로 자녀문제를 동반한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일이었으며,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그 문제는 부모뿐 아니라 사회전반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당시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쏟는 곳이 없었다. 이에 상담소는 이혼부부 자녀문제의 심각성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구 · 검토에 들어갔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이혼부부의 자녀관을 살펴보았다. 이혼부부의 자녀문제에 대한 관심도, 자녀 양육문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입양문제 등 22개 항의 설문을 작성한 후, 1978년 4월부터 8월까지 이혼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 437명과 가정법원을 찾은 100명으로부터 답을 구했다.

다음으로 1979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과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방법원의 자녀양육에 대한 판례를 수집 ·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판례에 나타난 청구인 · 피청구인의 성별, 연령별, 혼인 계속 기간, 자녀수에 따른 신청 당사자 등이었으며 이를 분석하고 법원의 양육비 지급결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원의 태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상담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혼부부의 자녀문제 역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혼신청 당사자들의 조사 또는 조정단계에서 자녀문제를 법원이 직권 사항으로 다룰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

둘째, 판례조사에서 어머니가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례가 더 많았고 법원도 어머니 쪽의 자녀 양육을 인정한 사례가 많았던 사실은 설문조사에서 자녀와 어머니 양쪽이 다 어머니가 양육하기를 희망했던 사실과 일치한다.

셋째, 어머니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규정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 아동의 해'인 1979년 중간보고로써 '이혼부부의 자녀문제'라는 주제로 월례목요강좌(12월 6일)에서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상담소의 조사연구반은 1979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인구통계, 취업인구수, 여성교육인구, 여성의 정계 · 법조계 · 교육계 등 각종 분야 진출 현황, 종교인구, 여성단체 일람, 여성근로자에 관한 실태, 여성관계 연표 중 우리나라 여성의 분야별 인구 및 기타현황에 관한 통계 조사에 착수했다. 이 통계자료는 「가정상담」지 1980년 4월호(통권11호)부터 연재하여 1985년 12월호까지 27회에 걸쳐 보도되었다.

한편 상담소는 출판, 홍보, 조사 · 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978년 4월 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로 출판사 등록을 마쳤다.

이렇듯 한 단계씩 차분하게 체계를 갖추어가면서 상담소의 연구 · 조사사업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이혼제도의 개선, 이혼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등 가정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꾸준히 가족법개정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편집부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4 CTP-8

인·터·넷·상·담

Q 저는 2019년 3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17세 아들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이 아빠는 이혼 후 1달 만 준 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를 시켜 전화도 해 보았으나 아이 아빠는 저와 아이의 전화를 모두 피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그리고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갖습니다(동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이에 따라 귀하는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3조의2). 여기서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복미영 상담위원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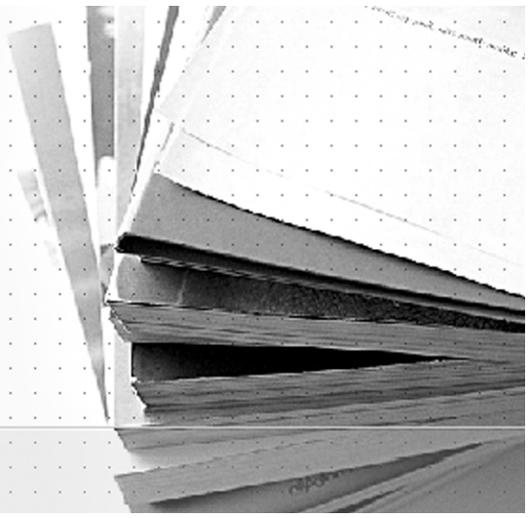

봄에 나는 없었다

애거사 크리스티 장편소설
공경희 옮김

포레,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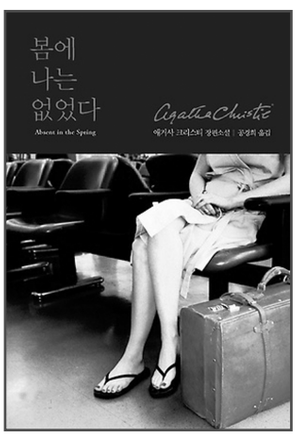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가 '메리 웨스트매콧'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6권의 심리 서스펜스 작품이 있는데 특히 여성의 자아에 관한 심리묘사가 돋보인다는 서평을 읽고 가장 먼저 주문해서 읽은 것이 이 책『봄에 나는 없었다』였다. 제목만 보고 나름대로 예측해 본 것은 결혼하고 가족에 모든 것을 헌신하여 자아를 잃은 여성에 관한 것은 아닐까하는 그야말로 뻔한 추측이었다. 작가로서 애거서 크리스티가 인간관계와 내면의 심리를 꿰뚫어보는데 얼마나 훌륭한지를 잠시 망각한 생각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셜록 홈즈니 괴도 루팡 등의 장르소설에 심취하여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레이몬드 챈들러, 반 다인 그리고 그녀 애거서 크리스티의 거의 모든 작품을 읽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휴가를 떠날 때면 몇 권의 장르소설을 꼭 챙겨가는 내게 어릴 때 무조건 존경스러웠던 애거서 크리스티는 당대의 상황에 비추어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면서도 작품에 드러나는 인종적 편견, 과학적 한계 등을 의식하게 되면서 조금은 혐오스러울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드리운 추리소설가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필명으로 발표한 이 소설은 추리소설가로서 가진 서스펜스와 심리 스릴러적 요소가 훌륭하면서 여성, 아내,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관계를 꿰뚫어보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고 훌륭했다.

자상하고 유능한 변호사 남편, 반듯하게 자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활기 넘치는 주부, 조앤 스쿠다모어. 그녀는 바그다드에 살고 있는 막내딸의 병간호를 마치고 바그다드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길에 여고 동창 블란치를 만난다. 학창 시절 친구들의 우상이었던 블란치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자 이야기나 떠들어대는 천박하고 추레한 중년으로 변해 있었고, 조앤은 그녀와 자신을 비교하며 속으로 우쭐댄다. 하지만 블란치는 조앤의 가족에 대해 언뜻언뜻 이해 못할 이야기를 던져 조앤의 심기를 거스른다.

조앤은 그 후 폭우로 기차가 끊기면서 사막의 기차역 숙소에서 발이 묶인다. 사막을 산책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조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묘사는 서스펜스와 스릴이 넘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며 니체의 말을 거듭 생각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특히 심연이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말은 참으로 서늘하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사막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던 조앤은 집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고 이 반전은 책의 마지막 문장 "당신은 외톨이고 앞으로도 죽 그럴 거야. 하지만 부디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르길 바라"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서늘한 반전을 선사한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6 CTP-8

영화이야기

벌새

감독 김보라

출연 박지후, 김새벽, 정인기, 이승연

개봉 전부터 떠들썩했다. 〈벌새〉라는 낯선 작품이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넷팩상/관객상을 비롯하여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18회 트라이베카국제영화제, 제45회 시애틀국제영화제 등 전 세계 영화제에서 25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놀라움 섞인 의문을 자아냈다. 1994년을 배경으로 한 14살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국경과 인종을 간단히 넘나드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김보라 감독이 〈벌새〉를 처음 준비할 당시 들었다는 충고, "여자애가 주인공인 두 시간짜리 영화는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라는 유의 이야기를 나 자신 역시 너무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느끼는 패배감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

1994년, 중학교 2학년 은희(박지후)는 대치동 아파트 상가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고등학생 언니 오빠와 함께 산다. 단짝 친구 지숙과 함께 의욕 없이 다니던 동네 한문 학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온다.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는 것 같은 선생님 영지(김새벽)는 처음부터 남달랐다. 은희와 지숙을 아이 취급하지 않았고, 처음 마셔보는 차를 대접하며 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은희는 첫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지숙과의 다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입시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주먹질하며 푸는 오빠 때문에 분노하지만, 그런 속내를 영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소통의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온다.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인파가 한창 오가던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지던 그날이.

〈벌새〉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은 한국의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점이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5인 가족의 모습이 가식 없이, 편견 없이 그대로 담긴다. 이를테면 4, 50대 남성 가장이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늘어놓지만 아내는 무관심하게 반찬 상태를 살펴보고 자식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는다. 식탁 위로 허망하게 울려 퍼지는 가장의 시끄럽고 무의미한 발화, 그 앞에서 딱히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무난한' 식사 시간의 첩경임을 일찌감치 깨달은 나머지 가족들. 서로를 대단히 미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서로의 사이에 투명

한 벽이 생겨났음을 깨닫는 중학생 소녀, 그나마 최선은 그 벽 너머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완전히 귀를 닫지 않는 것 정도임을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소녀 은희.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은희는(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좌절을 14살 무렵부터 이미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 눈 앞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면서 궁금한 것이 점점 늘어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은희의 존재는, 은희의 질문은 간단하게 무시당한다. 오빠에게 손찌검을 당한 날, 은희는 큰마음 먹고 식탁에서 "오빠가 날 때렸어!" 라고 고발하지만 장사 때문에 늘 피로에 절어 있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싸우지들 마라" 뿐이다. 이 문제가 가정 내 폭력 혹은 성별 간의 위계화라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머리가 점점 굵어지는 남매간의 다툼이라는 '일상' 으로 취급되는 순간, 은희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제기가 생겨난다. 주어진 대로, 들은 대로만 순응하던 어린시절에서 한 걸음 성큼 내딛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은희의 속내에 귀기울여주며 은희를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영지와의 교류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남들과 다른 것 같다는 이유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분노와 좌절이 모두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다…. 그리고 삶은 이상하지만 아름답다.

〈벌새〉는 1990년대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은희 같은 14살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공감하게 되는 영화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대표되는 '레트로 1990년대' 영상물이 명랑한 대중가요와 화사한 색채로 균질화 시켜 버렸던 그 시절이 놀랍도록 세밀하게 되살아난다. 그때 모두가 떠들썩하게 웃고만 살았던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야만스런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던 불길한 공기, 2000년대의 많은 변화를 이미 예비하고 있던 격동기의 디테일이 한 소녀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8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 및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본 상담소에서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의 참여 후기를 싣는다.

김 민 재
동국대학교

처음 가정법률상담소에 실습을 오기 전에 작년에 같은 곳에서 실습을 한 후배에게 현장실습이 어떠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할 만해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문제 있는 가정이 많은 것만 빼면…' 이라고 대답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가족법 전반입니다. 특히 이혼, 상속, 후견 등의 부분에서 법전에 나와 있는 법률이 실무에 적용되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면서 아직 현실과 법의 거리가 보이는 것보다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률의 적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고, 평소에 생각하거나 배운 것보다 제도들이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제도들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는 사건을 보면서 착잡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시다 보니까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화를 내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신 반면, 우리나라 사법심사가 3심제인 것을 모르시는 분,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 하시는 분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체계에 대해 무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일 깊이 느낀 것은 '결혼을 잘 하자' 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일은 상담하는 곳이고, 가정의 다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비율이 높은 것이 이혼이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이나 모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행복하던 부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혼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 사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비록 4주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같이 실습하는 학생들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막상 미래에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야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이 유 림
이화여자대학교

저는 막연하게 공적인 일들이나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일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연수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학과도 아니고, 법과 관련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힘들었고, 무작정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내담자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간한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가족법 지식들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등 간단한 절차 정도는 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법원 내 민원실에 위치한 상담소의 상담에 참관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쉽게 구조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심포지엄을 들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직까지 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29 CTP-8

질화 및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인식 개선 및 법제화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두 달 간의 연수 활동을 통해 내담자 분들께 법률 구조 신청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증인 진술서 작성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률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처음이라 많은 것을 익힐 수 있었고, 그분들께서 상담소에 감사하다고 인사하실 때 알 수 없는 뿌듯함을 함께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라오니 모임, 둥지 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 보조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건너 듣는 것과 실제로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서실 일을 하면서 현재 계류의안들을 파일로 정리하고,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들을 요약하면서 최근의 가정법 개정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 활동을 마치며 법률, 그 중에서도 결혼과 이혼, 상속, 친생자존부, 가정폭력 등 가족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옥계에서 진행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이랑 행복캠프〉에 함께 참여하면서 상담소가 최전선에서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법률 구조 및 도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생이 법률과 관련한 공공 활동을 이렇게 접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현장실습 활동이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익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현 학

이화여자대학교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고가 떴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였고, 합격을 했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대학에 온 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현장 실습이었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구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현장 실습 출근 세 번째 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법률 교육 프로그램에 진행 보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강의 중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 실습생으로서 일을 하며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며 파산면책신청서 작성, 전화 상담 안내, 법률 구조 업무를 실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 이혼, 양육, 상속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는 대다수의 내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혹은 힘든 상황으로 인해 법률적인 정보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법률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률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자신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모르거나 배운적이 없어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찾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범위나 규모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작게나마 현장 실습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법률구조 현장에서 배우고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뿌듯했습니다. 또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격언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법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0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법교육

9월 17일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9월 28일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 참여

본소에서는 9월 17일, 28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4일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열린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가족법개정운동과 함께 법률구조 및 본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법 상식, 상담소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부성원칙조항의 개정, 부부재산제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개정, 비혼모 부양료 청구권 신설 등과 관련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료로 가정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도움이 되었고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인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법률상담소 직원4명, 자원봉사자 7명, 그리고 시민 596명이 참여하였다.

9월 28일 관악구청에서 열린 다문화가족박람회에서는 '법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각종 게임활동과 만들기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외국국적의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일반 내국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본소에서는 영어 및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된 상담소 소개 브로슈어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며 상담소의 법률구조 사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다. 가족법 개정 성명운동과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법률퀴즈, 에코백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가정법률상담소 직원4명, 자원봉사자 20명, 그리고 시민 520명이 참여하였다. (관련사진 2면)

법률구조체험교육, 인왕중학교 1학년 대상

본소에서는 9월 24일 인왕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 80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활동' 에 대한 영상시청 후 중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 상식 퀴즈' 와 '형사재판 절차' 에 대한 조은경 상담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법률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였다. 강의 후 천다라 상담위원의 진행으로 인왕중학교 학생들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주제로 형사모의재판 '난 손만 올렸을 뿐이고' 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배심원 등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시연하였다. 유죄와 무죄 판결에 앞서 학생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학생들 눈높이로 각색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법상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다.

소감

- 법률이 엄청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법 덕분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미있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는데 무죄 판결이 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 법원에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로 잘 알게 되었다.
- 유익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 여기 오고부터 법원에 대해서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증인역할을 맡았는데 진짜 법원에 있는 것 같아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 처음 알았고 판사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가족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실제 재판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실제 재판장의 분위기와 재판절차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재판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법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오늘 그럴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재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법정이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가족법 및 법률구조 사례 특강, 이레상담교육원 대상

9월 25일 이레상담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 35명이 본소를 방문하여 가족법 및 법률구조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상담소의 법률구조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이날 '가정폭력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가족법과 상담사례'와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및 구조 사례'에 대한 강의를 조은경 상담위원과 천다라 상담위원이 하였다. 교육생들은 가정법률과 가정폭력 관련해 그동안 궁금하였던 다양한 질문들을 하였고 법률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교육을 마친 후 교육생들은 이후 가정폭력관련 상담현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므로 상담소의 역할과 법률구조사업, 가족법에 대한 강의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자원봉사자 재교육 실시

9월 6일 본소의 전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재교육으로 비혼모가정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에 참여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이병주, 홍진범 자원봉사자가 참석하였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 학대 예방 협약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

9월 20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태 과장과 허민지 대리가 본소를 방문하여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협약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추후 양 기관간의 협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9월 25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40명이 참석하였다. 강의주제는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였다. 강사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잘 파악하고,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받아들이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부부 관계에서 사랑을 가시적으로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기간이 오래되면 부부가 주고받는 사랑의 양이 균등해져야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될 수 있기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실제 부부들의 사례를 이용한 설명이 재밌고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2019년 10월 24일에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9.4.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9.17.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 서대문구사회복지박람회
– 조은경 상담위원
9.18.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2019년 9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403				
법률상담 (5,962)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순회
1,080	4,656	186	1	39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11	72	58		

* 인터넷 정보 이용 53,161건

2019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403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962건(93.1%), 화해조정 311건(4.9%), 소장 등 서류작성 72건(1.1%), 소송구조 58건(0.9%)이었다.

법률상담 5,96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8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6%), 부부갈등(2.9%→3.1%), 이혼(18.6%→19.9%), 사실혼해소(1.0%→1.1%), 위자료 · 재산분할(10.2%→12.5%), 친권 · 양육권(6.1%→7.4%), 입양(1.5%→1.6%), 유언 · 상속(6.7%→6.9%), 미성년후견(0.5%→0.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부동산(0.1%→0.2%), 채권 · 채무(0.3%→0.4%), 민사기타(0.4%→0.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2%→0.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96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80건(18.1%), 전화상담 4,656건(78.1%), 인터넷상담 186건(3.1%), 서신상담 1건(0.0%), 순회상담 39건(0.7%)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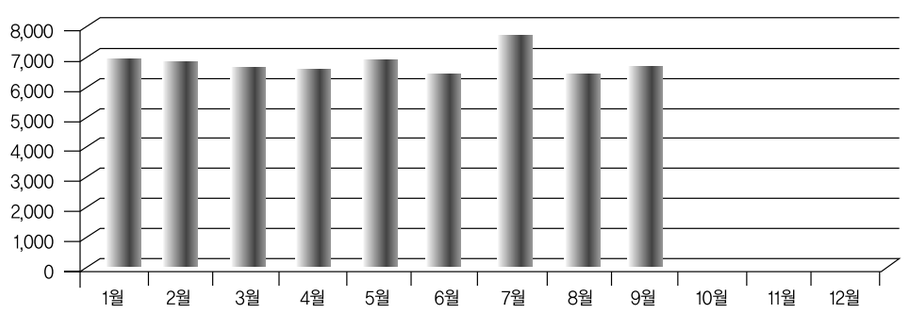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3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9.20.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서울시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 신용회복상담
– 전규선 상담위원
9.24. 한국건강가정진흥원–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위한 법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9.24. 법률구조체험교육(6)–인왕중학교 1학년
– 조은경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
9.25. 법률구조체험교육(7)–이레상담교육원
교육생 대상
– 조은경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
9.25. 영등포 보현의 집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
– 전규선 상담위원
9.26.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및신용회복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9.28.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관악다문화가족
박람회
– 복미영 상담위원, 박상진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에서 '가족법개정사'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10일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주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18일에 법무부 의뢰로 민간법문화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사)청소년교육전략21연구팀의 김윤나, 손진희 연구원을 맞이하여 본소의 법문화진흥센터 운영, 특히 법교육 사업의 실적 및 역량, 인적 자원과 예산 등 자원, 강점, 제언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은경 상담위원이 함께 하였다. 9월 2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윤영, 강종협, 김수경, 김태주, 박소영, 박수열, 오현희, 윤원섭, 이혜민, 이효재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김진아, 류현정, 이승주,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라연, 권윤정, 권지호, 김경민1, 김경민2, 김동은, 김상협, 김송희, 김수빈, 김수연, 김재희, 김준성, 김지연, 김지우, 김하영, 김혜원, 김혜지, 나현수, 남은결, 노규림, 박범근, 박선아, 박소언, 박수아, 박수연, 박지원, 박지윤, 반민지, 배상준, 변정은, 석재현, 성휘연, 손준호, 신유리, 신유림, 심정윤, 양희정, 엄윤서, 오정훈, 윤여영, 이다경, 이서희, 이수정, 이승철, 이우현, 이은현, 이현학, 임소연, 임지윤, 정유경, 조예림, 조은비, 조주현, 최우정, 한봄이, 홍나연, 황인경 님

국민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노상혁, 전우현, 최서영, 한종선 님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원찬빈, 정재준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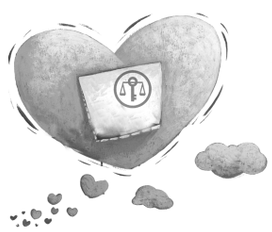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4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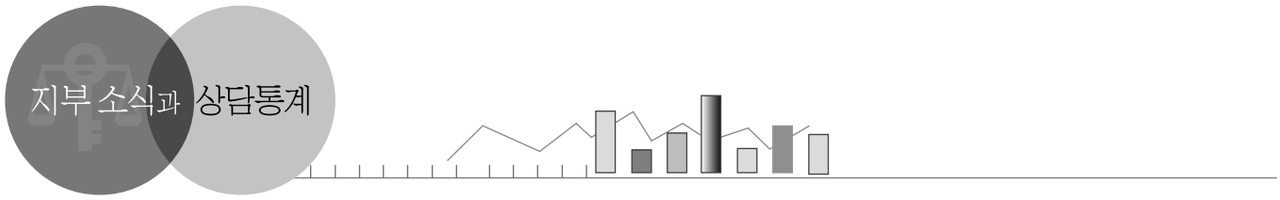

구리 · 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4회, 형사조정 8회를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정이수, 김효경, 장경아,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출장상담 60건, 가사조정 10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회, 23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행복지수 UP UP! 사업으로 9월 20일~21일 가족캠프 '休 플러스, 행복플러스 가족여행'을 안동 이상루 고택에서 1박 2일로 실시하였다. 정건진, 안혜림, 정홍욱, 김재철, 도낙회, 이성관, 이서준, 이승익, 나만수, 김영심, 엄요한, 남호진, 조은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에서 4회, 광주시법원에서 3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 내소 2회를 실시하였다. 9월 17일, 19일 성남고운누리, 판교노인복지관, 도담 어린이집에서 '2019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강의를 실시하였다. 장수혁, 정수경, 한승일, 허정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9월 7일부터 3주간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20일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사업 '감성 로스쿨' 프로그램을 신중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상담소 사무실을 인천 연수동 602-4로 이전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19일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태우, 서정식, 박진호, 장수진, 최효재, 이윤선, 박지현, 문나연, 김현수, 한두환, 김춘희, 강은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익산지부

9월 20일 익산역에서 중앙동과 중앙시장, 창인동 일대 거리를 돌면서 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데이트폭력 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9월 5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 3회, 가사조정 1회를 실시하였다. 임영곤, 송진희, 장춘석, 한지영, 김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5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중구지부

9월 25일 송정역 광장에서 가정폭력예방 활동 및 상담소 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재경, 박진석, 장상현, 정수경, 박은정, 여지은, 이수희, 백존익, 이효재, 고승현, 박수열, 홍지혜, 박정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 · 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1회를 실시하였다. 강재현, 전철우, 홍강오, 백경석, 민태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9월 16일, 17일 무료생활법률강좌 거리 홍보 및 기관방문 홍보를 실시하였다. 19일, 20일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생생법률이야기-무료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2019년 8월 지부 상담통계

구분 / 지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00	92	5		3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147	44	103		
군산 (063) 442-1560	146	119	25	1	1
대구 (053) 745-4501	922	810	112		
대전 (042) 520-5258	178	171		7	
동해 (033) 535-0188	118	118			
목포 (061) 273-2514	167	164	2	1	
부천 (032) 667-2314	407	317	90		
성남 (031) 707-6661	352	275	70	4	3
송도 (032) 834-1369	243	108	118	7	10
수원 (031) 243-4600	413	295	107		11
순천 (061) 753-9910	193	188	5		
안동 (054) 856-4200	139	131	7		1
울산 (052) 246-9568	193	171	10	4	8
익산 (063) 851-5113	273	271			2
인천 (032) 865-1120	308	84	212	2	10
전주 (063) 244-2930	250	246		1	3
정읍 (063) 535-3705	138	138			
제천 (043) 644-5690	103	103			
중구 (02) 2238-6554	294	294			
진주 (055) 746-7975	164	124	40		
창원 · 마산 (055) 261-0280	318	302	10	1	5
청주 (043) 257-0088	155	124	23	8	
춘천 (033) 257-4688	114	114			
태백 (033) 554-4004	87	87			
평택 · 안성 (031) 611-4251	172	155	14	3	
포항 (054) 283-7555	54	54			
지부총상담	6,148	5,099	953	39	57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6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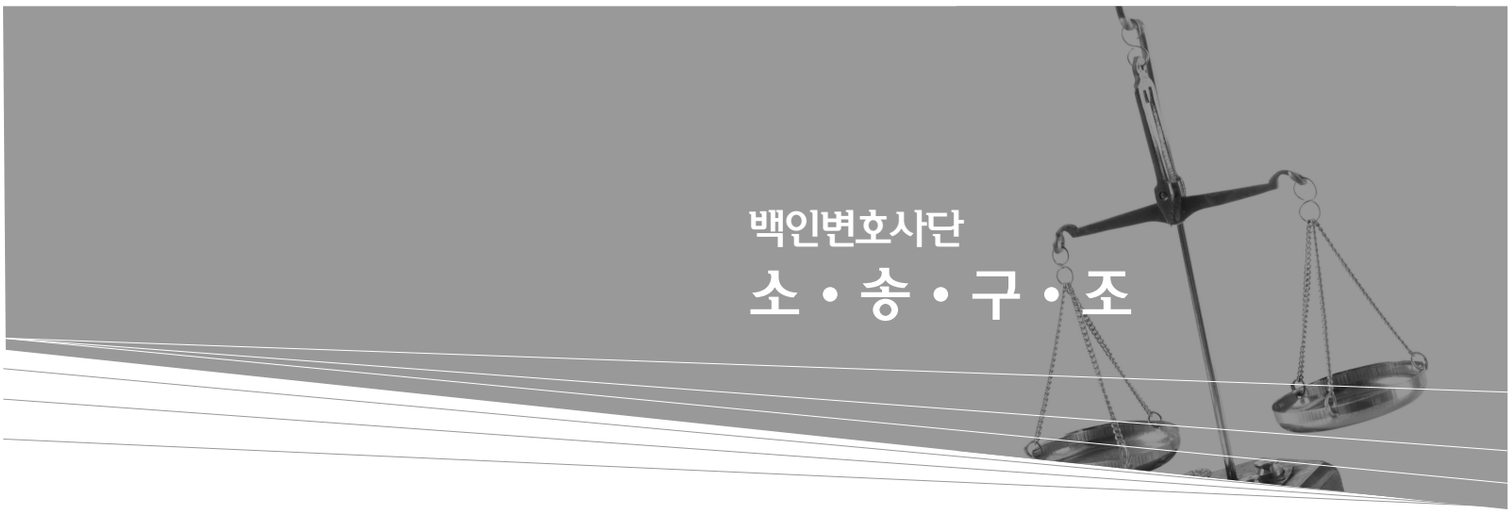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외도로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52

담당 : 윤원섭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6세)는 2004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5세)을 두고 있다. 2006년경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를 용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외박을 반복하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2007년경 피고는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6개월 뒤 피고가 용서를 구하며 집에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상간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6.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부인 및 자녀들을 폭행한 전남편에 대한 면접교섭 배제 및 양육비 증액 결정

법률구조 2018-302, 303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 배제,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7세)과 상대방(남, 39세)은 2006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1(여, 12세), 사건본인2(남, 10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2014년 2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일시금으로 8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매주 토요일에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혼 후 상대방은 수시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겠다며 찾아왔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으나 상대방은 화가 나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며 자기 집으로 여러 차례 데려 갔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사건본인1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건본인2의 배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지속하였다. 사건본인들은 꿈에서 상대방이 폭행 및 폭언을 했다며 울면서 잠에서 깨고, 길을 다닐 때에도 상대방을 만날까 마음을 졸이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키우라고 데려다 주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2018년 인천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심판 청구에 응소하고, 이에 대한 반심판 청구로 상대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7 CTP-8

방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상대방의 폭행 및 아동학대를 피해 쉼터에 입소해 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에는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쉼터에 입소한 까닭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변경을 청구하였다.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취하하였다.

결과 :

*면접교섭 배제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 8. 26.)

1. 반심판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변경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 8. 26.)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3호O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0. 31.자 양육비부담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8. 1.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8-420

담당 : 한상준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2세)과 상대방(남, 50세)은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8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외도로 2006년 협의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상대방은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연락까지 두절되어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상대방은 양육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을 통해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는 등 양육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현재 사건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입시 준비를 하며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대학생이 되면 등록금, 기타 생활비 등이 더욱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 8. 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자녀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8-437

담당 : 김수정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29세)은 상대방(여, 27세)과 2015년경 만나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었으나, 2017년 12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지기 전까지 청구인과 상대방은 함께 생활하며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였고, 청구인의 소득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헤어질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달 만에 이를 번복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양육비를 100만 원 1회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청구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2017년 10월부

가정상담1910.ps 2019.10.7 1:20 PM 페이지38 CTP-8

터 피부관리사 등의 일을 하며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사건본인은 현재 어리고 병원비 지출이 잦은 편이다. 청구인은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소득이 있으나 유동적인 편이라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혼자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받고, 동시에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7. 25.)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2) 사건본인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3) 사건본인의 생일 및 어린이날 중 하루

4) 매년 설날(구정) 연휴기간 및 추석 연휴기간 중 하나의 연휴기간

5) 위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나. 면접교섭 장소: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인도방법: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위해 청구인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으로 와서 사건본인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사건본인을 다시 위 아파트 정문에서 청구인에게 데려다 준다.

라. 협조 의무: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청구인과 협의하고, 청구인 또한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잇따른 사업실패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444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젊었을 때 야구선수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고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수입영화사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여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였다. 하지만 경험부족 탓인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적자에 허덕이다 2년 8개월 만에 폐업하였다. 큰 손해를 보게 된 신청인은 재기를 위해 친한 후배와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건설업을 잘 알지 못해 후배에게 사업을 맡겼고 부족한 사업자금이 생기면 대출을 받아 투자해주었다. 그런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서 후배가 자살을 하였다. 신청인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1억 4천만 원이라는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2번의 사업실패와 극심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까지 신청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신청인은 건강을 회복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9. 5.)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9년 10월 교육부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장소 : 잠실 롯데월드
▶ 내 용 :

1.「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롯데월드 체험 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0월 14일, 10월 28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0월 10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만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상담표지10월 2019.10.7 1:25 PM 페이지1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생추정,

배제사유는 + 늘리고,

불필요한 추정은 − 줄여주세요.

자녀의 행복이 × 배가 되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출생등록권을 ÷ 나누어주세요.

●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2시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좌장	오종근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주제발표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송효진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일수 판사(수원가정법원) 안문희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 **http://lawhome.or.kr/m**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